

대한 양계협회

소식

축산물전 신상품, 고급상품 선보여



본회가 후원하여 실시한 축산물전이 지난 3월 17~23일, 26~4월 1일에 걸쳐 현대백화점(압구정) 지하특설매장과 뉴코아백화점에서 각각 열렸다.

닭고기의 경우 토종닭, 오골계 등 시중에서 보지드문 상품이 선보여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었으며 계란의 경우도 미네랄 오일

코팅란의 고향달걀, 비타옥도란, 요드란, 오메가란, 피단 등 다양하게 판매되었다.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와 공동후원한 닭고기·계란 요리강습 및 시식회도 행사중 함께 열렸는데 미각을 돋구는 요리들이 다채롭게 소개되어 주부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목차뒤 화보참조)

'92닭경제능력 검정사업비 보조요청 보조금 8천만원 확정

본회는 '92축산발전사업계획 및 실시요령('92. 1. 20자 추정 27400-66)에 의거 '92 닭경제능력 검정사업계획을 농림수산부에 승인요청한 바 지난 3월 20일 승인을 받았다.

검정사업기간은 '92. 1. 1일부터 12. 31일까지이며 목적은 닭의 자질개량으로 국제경쟁력제고, 양계농가에서 병아리 선택의 지침제시, 농가소득증대로 양계산업발전에 기여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회가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아 추진하는 '92닭 경제능력 검정사업의 소요경비 현황은 다음과 같다.

보조사업 소요경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총소요액	축산진흥기금 (보조금)	자부담 (협회)	적요
금액	173,229	80,000	93,229	
비율(%)	100	46	54	

검역시행장 지정 및 검역물의 관리요령 개정 전용면적 330m² 이상으로 완화돼

본회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91. 11. 4)에 따라 초생추 검역시행장 계류사의 구조(계류사의 전용면적 등)가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농림수산부에 개정을 요청한 바 검역시행장 지정 및 검역물의 관리요령이 12일부로 개정되었다.

검역시행장 지정기간

- ① 동물 검역시행장 : 3개월(다만, 당회분은 1개월)
- ② 축산물 검역시행장 : 2년(다만, 단기사업은 5개월이내)

초생추 검역관리

- ① 초생추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허가 신청시 검역시행장 관할 소장의 검역시행장 확보 여부 및 국내도착 시기등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관할 소장은 수출 초생추 검역시행장 관리인으로 하여금 동검역 시행장내의 종계, 종란, 초생추와 부화등에 관하여 위생관리를 전담하는 전임수의사를 두게 할 수 있다.

• 검역시행장의 시설기준

1. 수입동물의 검역시행장

구 분	시 설 기 준
1. 검역 준비실	검역준비실은 검역관이 가검물 취급 등 검역업무 수행에 용이한 시설로서 검역상 필요한 아래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기자재는 동력분무기, 자비소독기, 냉장고, 액량계(100ml, 500ml, 1,000ml) 등 2) 소독약품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

2. 검역시행장 위치	가축 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로 기존의 사육 동물과 격리된 장소이어야 한다.
3. 계류 시설	수입동물에 따라 전두수가 안전하게 사양관리 될 수 있는 견고한 시설로서 바닥은 콘크리트 등 불침투성 물질로 오물수거와 수세 및 소독이 용이할 수 있도록 설비되어야 한다.
4. 격리 축사	환축 격리용 축사로서 검역용 축사와 동일한 구조로 하되 구획된 시설이 있어야 한다.
5. 분뇨 및 오물처리장	검역기간중 동물의 배설물과 오물등의 저장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이 있어야 한다.
6. 출입 소독조	출입구에는 방역상 필요한 소독조를 비치하여야 한다.
7. 보정시설	동물에 따라 검사 및 처치를 위한 보정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8. 종업원 탈의실	검역기간중 사양관리 및 검역보조요원의 탈의 및 세척시설이 있어야 한다.
9. 출입제한	검역시행장의 입구는 검역기간중 출입자의 통제가 용이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차단시설이 되어야 한다.

2. 초생추(병아리, 오리) 검역시행장

구 분	시 설 기 준
1. 검역 준비실	검역준비실은 검역관이 가검물 취급 등 검역업무 수행에 용이한 시설로서 검역상 필요한 아래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기자재는 동력분무기, 자비소독기, 냉장고, 액량계(100ml, 500ml, 1,000ml) 등 2) 소독약품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5조 및 국립동물검역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품중 용도에 따라 선택 비치 3) 작업복, 위생화, 위생복 등
2. 검역시행장소의 위치	검역시행장소는 지정 계류사의 반경 50m 이내에 양계장, 도계장, 부화장, 계분처리장, 사료공장 등 관련시설이 없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

구분	시설기준
3. 검역계류 시설	<p>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가. 창이 없는 계사 또는 고정창문 계사로써 출입구조가 2중문으로 되고 계류사내에 탈의시설이 있는 경우</p> <p>나. 해안, 하천 등 지리적 여건상 고립 또는 자연적인 격리가 가능한 경우</p> <p>가. 계류사는 독립된 건물이어야 하며, 주위는 철조망 등으로 차단 시설을 하여야 한다.</p> <p>나. 계류사 및 사료창고의 창문 및 환기창 등은 방충, 방서의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p> <p>다. 탈의실 및 세척 시설은 계류사내 또는 계류사에 인접하여 있어야 한다.</p> <p>라. 출입구 소독조는 장화를 충분히 소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수세 소독조를 계류사 출입구에 비치하여야 한다.</p>
4. 계류사의 구조	<p>가. 계류사의 전용면적은 병아리의 경우 330m²(1회 10,000수 수용규모)이상, 오리의 경우 200m²(1회 2,000수 수용규모) 이상이어야 하며, 이환 측사를 별도 구획 설비하여야 한다.</p> <p>나. 바닥과 벽은 청소 및 소독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p>
5. 오물 처리장	<p>검역기간중의 배설물과 오물등의 저장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이 있어야 한다.</p>
6. 소각장	<p>폐사체, 오염물 등을 방역상 안전하게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p>
7. 출입제한	<p>검역시행장 입구는 검역기간중 출입자 및 사료등의 반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차단시설이 있어야 한다.</p>
8. 전입관리인 숙소	<p>검역기간중 사양관리를 위한 전입관리인 숙소가 있어야 하되 동숙소는 가능한 계사에 인접되어 있어야 한다.</p>

수입 초생추의 검역관리 요령

수입 초생추의 검역은 해외악성 가금전염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립동물검역소 및 초생추 검역

시행장 관할 가축방역 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방역관리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장은 검역시행장 관리인에게 검역시행장내 수입 초생추의 입고전과 출고후에 소독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2. 관할 소장은 수입 초생추의 검역기간중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 역학조사 및 임상관찰, 관리인의 사양관리일지 확인
 - 나. 폐사추, 오물, 배설물 등에 대한 소각매물 등의 방역조치
 - 다. 기타 검역상 필요한 사항
3. 수입 초생추 시행장으로 지정받은 계류사에 대하여는 해당 초생추 입고전 30일이상 기존 가금류의 사육을 금지하여야 한다.
4. 관할 소장은 수입 초생추의 검역종료 즉시 초생추 검역시행장 관할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및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가. 검역장소
 - 나. 축주명
 - 다. 품종
 - 라. 수수
 - 마. 원산지
 - 바. 도입일자
 - 사. 검역종료일
 - 아. 예방접종 등 기타 특기사항
5. 관할소장으로부터 초생추의 검역종료 사실을 통보 받은 관할 도지사는 가축위생시험 소장(지소장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초생추에 대하여 검역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간 다음과 같은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가. 수시, 임상관찰 및 필요시 혈청검사 또는 병성감정 등의 실시
 - 나. 가축전염병 또는 전염성 질병발생시 격리 이동제한, 살처분 등 필요한 방역조치 사항을 도지사 및 축주에게 보고(통보)
 - 다. 예방접종 권장 및 지도

건축법시행령전문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본회는 지난 3월26일 건설부가 공고한 건축법시행령전문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미흡한 점을 보완, 건설부장관에게 본회의견을 제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입법예고 내용	본 회 의 건	문제점 및 사유
<p>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읍·면의 지역에서 군수가 도시계획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외의 곳에서 건축하는 농·어업용 주택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하(현행 60제곱미터 이하) 축사·창고의 경우에는 각각 150제곱미터 이하(현행 1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군수에게 신고만 하고 건축할 수 있다.</p>	<p>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읍·면의 지역에서 군수가 도시계획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외의 곳에서 건축하는 농·어업용 주택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현행 60제곱미터 이하) 축사·창고의 경우에는 각각 150제곱미터 이하(현행 1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군수에게 신고만 하고 건축할 수 있다.</p> <p>다만, 건설부 장관이 승인한 표준설계도에 의거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규모에 관계없이 군수에게 신고만 하고 건축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허가 수속에 따른 많은 시간과 인력낭비 ○ 설계비, 감리비 등의 과다한 부담 ○ 건축허가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여 무지한 농민으로서는 감당키 힘들어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 건축법 제6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대상 건물의 공사시는 건축사를 공사 감리자의 지정이 필요없으므로 감리비의 절감을 통한 생산비의 감축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 축사는 대개의 경우 산간오지등 주택지와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게 되며 규모가 크다 하더라도 누구나 시공할 수 있는 단순한 건축물이므로 굳이 허가제를 할 필요가 없음. ○ 건설업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축사등 농어업용 시설을 건축시는 전문시설 허가업체가 아니라도 공사를 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신고로서 같음하더라도 하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 것임. ○ UR협상 등 개방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도 양계업의 경우 20,000-30,000수 규모의 가족노동단위 전업규모로 유도코자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89.12.23자 건설부 공고 제157호에 의한 축사표준설계도에 의거 10,000수 규모의 양계장을 건축코자 하면 최소한 성계사 1동에 825.84제곱미터(이 경우 육추사 1동 294.84제곱미터, 육성사 665제곱미터 별도 설치 필요)의 건축을 하여야 하는바 현재 정부가 입법예고한 내용대로 한다면 축산업 특히 양계업의 경우는 경쟁력 배양을 위한 축사의 신축 또는 개축하는데 하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조치로서 정부시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표준설계도를 활용할시는 규모에 관계없이 신고만 하면 건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요망함.

'92종계(P.S, G.P.S)수입추천 계획

농림수산부는 '92년도 수입제한 종축 및 유제품 수입추천계획을 확정하며 통보하였다. 이번에 확정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92 계획량		'91 실적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종 계	1,000천수	6,000천불	858	4,678

※종란은 수입한도량 제한없이 추천

'92년 1차(연26회) 산란계검정 및 집란계획 확정

본회는 '92.4.16~'93.9.1(72주간)까지 '92 제 1 차(연26회)산란계검정을 실시키 위하여 대상농장으로부터 출품신청을 받아 농장별, 품종별 출품 및 집란계획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다.

'92 제1차(연26회)산란계검정 농장별, 품종별 출품확정 및 집란계획

출품농장, 성명	출 품 내 역			집란 위원 성명	집란년월일		
	대표자 성 명	계 종 별	구 수				
백색			갈색	계			
고 창	신홍중	데 칼브와 렌		1	1	정선부	'92. 3.23-24
북 지	박수남	로 만 B		1	1	김춘수	'92. 3.23
중 원	배선채	하이 라인B		1	1	오봉국	'92. 3.21
한 일	차상협	이사브라운		1	1	박근식	'92. 3.23
동 남	윤용구	세 이 버		1	1	김상희	'92. 3.23
		스타크로스					
천 호	이계옥	마 니 나		1	1	김상희	'92. 3.23
종축원	원 장	국 중 23 호	1		2	박상문	'92. 3.23
		국 중 41 호	1				
삼 화	배성황	하이섹스B		1	1	한성욱	'92. 3.23
이 사		바브록B300		1	1	외국에서 직접출품	
이 사		바브록B380		1	1	"	
바볼나		하 료		1	1	"	
바볼나		데트라-SL		1	1	"	
계				3	10	13	

일본 '92양계·양돈 국제전시회 시찰단모집

일본양계산업 시찰단 모집

본회는 양계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구조개선 및 시설자동화에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효과를 최대한 높임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자동화 시설의 중간점검의 기회를 갖

고자 오는 6월 4일~6일까지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되는 '92양계·양돈 국제박람회 참관 및 일본 양계산업의 시설 자동화 현황과 계열화 사업, 유통부분의 시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시찰단을 모집하여 파견할 예정이다.

— 다 음 —

1. 참가대상 : 양계인 및 양계관련 종사자
2. 시찰인원 : 20명 내외
3. 시찰일정 : 4박5일(6월2일~6일)
4. 시찰지역 : 나고야, 오사카
5. 신청기간 : '92년 5월15일한
6. 기타문의사항 :
 - 사단법인 대한양계 협회
 - 전화 : (02)588-7651~4

육계분과위원회 개최

4월입추에 관심표명

3월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강석부)가 지난 16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3월 1일자로 품질면에서 향상된 점이 없이 사료값만 올라감에 따라 다음 회의때 건의서를 제출할 뜻을 밝혔다.

또 병아리가격이 일시적으로 약세현상을 보이며 정상을 찾아감에 따라 4월 입추에 특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계란가격 적정선 유지 기대

3월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최준구)가 지난 13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최근 채란농가에 뉴캐슬병이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가져옴에 따라 알값이 올라가게 되자 가격이 계속 오를 경우 생산자와 상인들 간에 혼란이 우려되므로 적절한 계란가격의 유지를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다.

의정부분회

임원개선 및 사무실 이전

본회 의정부분회(회장 유재룡)는 지난 3월로 임원을 개선했는데 이어 사무실도 이전하였다.

· 임원개선

회 장 : 유재룡

총 무 : 김성룡

· 사무실 이전

주 소 : 경기도 의정부 4동 215-61

전 화 : (0351) 43-4248, 2-6208

평사 별도 건조시설대상 제의 건의에 대한 회신

본회가 그간 환경처에 수차례에 걸쳐 평사 또는 고상식 계사 등으로 사육할시 사육이 종료된 후에 계분 또는 깔짚을 일시에 제거함으로 1일1회 이상 축분을 이동할 수 없어 행정지도 단속상 시비만 야기될 뿐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근거를 들어 육계사육 시설과 같은 계분 건조·발효를 계사내에서 할 경우에는 별도의 건조시설 설치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환경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별표2] 규정에 의거 닭 사육시설의 경우 축사 면적이 500㎡ 이상일 경우에는 축산폐수정화시설(건조시설 등)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여 닭 사육시설에서 발생하는 계분을 적정처리 하도록 되어 있으나, 육계사육시설과 같이 계사 바닥에 왕겨나 벚짚 등을 깔아 닭이 배설한 분뇨를 계사 내에서 건조·발효시켜 퇴비화함으로써 계분을 적정처리(무취, 수분제거 등)할 경우에는 별도의 건조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본회직원 승진인사

본회는 업무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로 승진인사 조치를 단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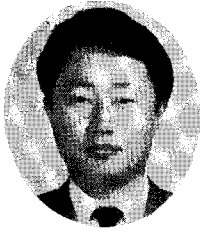
○ 강재명 : 총무부장
(전 총무차장)



○ 김용화 : 편집차장
(전 편집과장)



○ 한경택 : 검정소차장
(전 관리과장)



◦ 조종수 : 지도조사과장
(전 지도조사과장 대리)

본회 계군협청검사사업소 FAX설치

협청검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축위생연구소내에 있는 본회협청 검사소에 FAX를 설치하였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FAX : (0343) 68-7340

※ 본 팩스는 강남부화장에서 기증, 설치하였음.

포천채란분회 정기총회 개최

본회 포천채란분회(회장 김정식)는 '92년도 정기총회를 지난 23일 분회 사무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총회는 임원개선이 있었으며, 총회가 끝나고 최신 계란선별기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 임원개선

이사 : 배수명, 김경배, 장영춘, 한석진

감사 : 이천수, 윤홍호

총무 : 천용수

수원분회 정기총회 개최

본회 수원분회(회장 송상정)는 지난 3월

7일 동수원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임원개선, 사무실 이전, 정관개정 등 여러 안건을 통과시켰다.

정관개정에서는 본회 자격규정으로 “서울·경기 양계협동조합원이어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는 정관 제7조 2항을 삭제시켰으며 회비는 월 1만으로 하되 3월중으로 미납회비를 완납치 않을때는 속보전달을 중지하기로 했다.

또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사무실을 이전했다.

• 임원개선

회 장 : 송상정

부회장 : 천강균(채란분과 위원장 겸임)

최길영(육계분과 위원장 겸임)

감 사 : 최두훈, 심훈택

이 사 : 채란분과 : 강석부, 임진관,

신길호, 이만용

육계분과 : 김명제, 신명철,

배영옥, 최병교

• 사무실 이전

주 소 :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신갈리 68-2

전 화 : (0331) 8-5468

